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회사별 비교공시 항목 정비 및 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 공시 신설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공시 폐지 등)
- 다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 등)
- 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)
- 마.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(해외파생상품 신규 거래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의무 부과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5/12/1 개정 · 시행, 2025/12/4 개정 · 2026/1/1 시행)

1) 2025/12/1 개정 ·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☐ 법인 또는 단체가 전문투자자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 제출하는 신청서 기입 정보를 일부 정비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- ☐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서(별지 제2호) 양식 일부 변경
 - 신청자 정보(소속, 연락처 등) 추가
 - 법인등록번호 정보 추가
 - 당초 법인등기부등본은 징구하고 있으나,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
- 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신청서(별지 제2호) 양식 일부 변경
 - 신청자 정보(소속, 연락처 등) 추가
 - 법인등록번호 정보 추가
 - 당초 법인등기부등본은 징구하고 있으나,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하지 않고 있음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— 금융투자회사 대리신청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명확화

2) 2025/12/4 개정 · 2026/1/1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 변경사항을 영업규정에 반영하고, 연금저축 비교공시 항목별 공시주체 및 내용을 정비하여 상품과 판매회사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- ☐ 회사별 비교공시 항목 정비 및 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 공시 신설(제4-27조의2 제1항)
 - 자산운용사의 회사별 수익률, 수수료율 공시를 폐지하고, 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 공시를 신설
- ☐ 상품별 비교공시 공시항목 확대(제4-27조의2 제2항)
 - 투자수요가 높아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ETF)에 대해서도 추가 공시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5/12/10 개정 · 2026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개정사항을 시행세칙 및 서식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☐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공시 폐지 및 연금저축판매 회사별 적립금 공시 신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ETF) 공시 추가(제24조의2 제1항)
 -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에 있어 규정 제4-72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장집합투자기구별 적립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하고 산정하되, 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의 적립금 잔액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하지 않음
 - 최초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품
 - 작성기준일 현재 납입원금(설정원본)이 1억원 미만인 상품

□ 수정기준가 수익률로 수익률 산식 변경(별첨 3)

- 기존 산식에서 발생하는 극단값 보정을 위해 존재했던 제24조의2 제1항 제3호는 수정기준가 수익률 산식에는 불필요하므로 삭제

다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2025/12/4 개정 · 2025/12/5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을 연장하고,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도입에 따른 추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
 - IPO 또는 공모증자시 정책펀드(벤처기업투자신탁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)에 대한 공모주식 우선배정 일몰 예정(2025.12.31)에 따라, 우선배정 기한을 연장하고 배정 비율을 조정
 -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(2025.1.21)에 따라 도입된 ‘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’ 및 ‘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제재 강화’ 관련 추가 제도정비를 통한 합리화

[기존 IPO 공모주식 배정비율]

구분	IPO 시장	우리사주조합	일반청약자	기관투자자		
				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등	벤처기업 투자신탁	그 외
기존	유가증권	20% 이내	25% 이상	5% 이상	-	잔여물량
	코스닥	20% 이내	25% 이상	10% 이상	25% 이상	잔여물량

2) 주요 내용

가) 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 등

□ 공모주식 우선배정 기한 연장(부칙 제3조, 제4조)

-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 3년 연장(2025.12.31 까지 출자 · 투자 → 2028.12.31까지 출자 · 투자) 예정을 감안하여, 공모주식 우선배정을 2028.12.31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으로 연장

1) 대표주관회사 면책요건 보완은 2025. 12. 5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, 그 외 사항(공모주식 우선배정 비율 조정, 확약준수율 등 보완, 참여요건 위반자 제재 합리화)은 2026. 1. 1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

□ 공모주식 우선배정 비율 조정(제9조)

-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을 5% pt(코스닥 IPO·공모증자의 경우 25% 이상 → 30% 이상) 상향
 - 벤처기업투자신탁 활성화 정책 방향(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고, 2025.8.1)등 반영
-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은 현행 유지
 -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 국내 비우량 회사채(BBB이하)를 상당 부분 소화·주요 수요기반으로 기능하므로, 우선배정 축소시 비우량 기업의 회사채 자금조달 위축 우려
 - BBB급 이하 채권 잔액 9.6조원 중 3.0조원(31.0%)을 소화(2025년6월 기준)

[개정 후 IPO 공모주식 배정비율]

구분	IPO 시장	우리사주조합	일반청약자	기관투자자		
				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등	벤처기업 투자신탁	그 외
개정	유가증권	20% 이내	25% 이상	5% 이상	-	잔여물량
	코스닥	20% 이내	25% 이상	10% 이상	30% 이상	잔여물량

나)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추가 제도정비

□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관련 대표주관회사 면책요건 보완(제9조 제15항)

- (기존)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IPO 공모주 배정 수량이 의무(잠재 배정물량의 40%,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 신고서 제출분은 30%)에 미달하는 경우
 - 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 물량
 - 대표주관회사는 공모물량의 1%(30억원 상한)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의무 부과(패널티)
 - 기업인수목적회사(SPAC)는 실질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IPO 공모가격이 고정(2,000원)되어, 의무보유 확약 제고를 위해 대표주관회사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
- (개정) 기업인수목적회사(SPAC) IPO의 경우,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의무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 패널티를 면제함

□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제재 강화 관련 확약준수율 등 보완(별첨 2)

- (기존) 의무보유 확약 위반시 사후수습 확대 유도를 위해 수요예측등 참여계좌별로 ‘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’ 및 ‘확약준수율’을 산정

- 참여계좌별을 엄격하게 해석하면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참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확약 위반을 사후수습하는 경우 해당 사후수습이 제재 양정시 고려되지 않음

— (개정) 수요예측등 참여계좌별로 '위반 주식수' 및 '확약준수율'을 산정

- 위탁재산(펀드·일임·신탁) 참여계좌의 경우 자율규제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

□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제재 강화 관련 참여요건 위반자 제재 합리화(별첨 2)

— (기존) 사모운용사 등의 업력과 규모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강화하면서,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업력과 규모 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,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 등 참여조건 위반으로 일괄하여 업력·규모 요건 이외의 이유에도 강화된 제재를 부과

- (사모운용사 등) ①사모운용사(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), ②투자일임회사, ③겸영회사(앞의 ①,②를 겸영)
- (규모) 등록 후 2년 이상 & 위탁재산 AUM 50억원 이상, 위탁재산 AUM 300억원 이상
- 위반금액 : 배정받은 금액 → 신청한 금액
- 제재 상한 : 6개월 → 24개월

— (개정)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력·규모 요건과 그 외를 구분하여 제재를 부과

- 업력·규모 요건 위반 : 강화된 제재 부과(기존 유지)
- 등록 후 2년 이상 & 위탁재산 AUM 50억원 이상, 위탁재산 AUM 300억원 이상.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투자일임회사, 일반 사모집합투자회사 제외
- 그 외 요건 위반 : 제재 강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(배정받은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산정, 제재의 상한 6개월)

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(2025/12/3 개정 · 2026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합리화를 위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개정사항(2025.10.1.개정)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보고의제 근거 마련(제9조 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등)
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조정·의결 사항 중 성격상 조정·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

-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, 정기 공시 사항,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등

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(제36조 제2항, 제3항)

- 판매임직원등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고, 필요시 개선요구권 신설

마.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(2025/12/10 개정 · 2025/12/15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협회의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(제2-5조의3)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함
- 해외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의무 부과(2025.9.11일 개정, 2025.12.15일 시행)

2) 주요 내용

- 해외파생상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은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해외파생상품수탁거부 사유 추가(제7조 제1항 제3호)
- 해외파생상품교육과정(협회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하여 운영, 1시간 이상) 및 해외파생상품모의거래과정(외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하여 운영, 3시간 이상)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- 협회규정에 따라 해외파생상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허용(제7조 제4항)
- 본회 표준약관인 「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」에도 동일 내용 반영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